

## 주식교환 무효의 소 제기 공고

당사와 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간 주식교환에 관하여,  
박승민 외 53 명이 당사를 상대로 주식교환무효의 소를  
제기하였기에(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가합 103598), 상법  
제 360 조의 14 제 4 항, 제 187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.

2020 년 3 월 25 일

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  
대표이사 김 은 수